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전후대비표

〈지침관리팀〉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I. 대응체계			
3	1. 총칙 가. 법적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 2022-8호) 제1호가목 나. 대응방향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향('22.4.15.)] ■ (재택치료) 재택치료 지원 및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1. 총칙 가. 법적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 2023-7호) 제1호가목 나. 대응방향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23.5.11.)] ■ (재택치료 지원체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기존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	-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고시 개정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및 위기단계 하향 시행에 따른 대응방향 업데이트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재택)치료 관리 근거 없어져 지침은 더 이상 사용 불가능 - 다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행정안내센터 등 기존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단계 시 유지 예정이므로 문구 수정
	2. 심각단계시 대응 가. 관련 기구 설치·운영 〈조직별 대응체계〉	2. 경계단계시 대응 〈조직별 대응체계〉	- 위기 경보수준 조정(심각→경계)에 따른 대응 세부내용 업데이트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5	<p>나. 기관별 임무 개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관</th> <th>역 할</th> </tr> </thead> <tbody> <tr> <td>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td> </tr> <tr> <td>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치료제 지원 관리,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백신연구개발, 효능평가, 치료제 효능평가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td> </tr> <tr> <td>시·도 시·군·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td> </tr> </tbody> </table>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치료제 지원 관리,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백신연구개발, 효능평가, 치료제 효능평가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p>나. 기관별 임무 개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관</th> <th>역 할</th> </tr> </thead> <tbody> <tr> <td>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협력(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 간 협의 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td> </tr> <tr> <td>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및 민원 대응(1339 콜센터 관리) 검역 인력 보강 및 자원 조정 등 추가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지속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격리입원치료비, 생활지원, 장제지원 등 재정지원 </td> </tr> <tr> <td>시·도 시·군·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시·도별 환자관리반 운영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td> </tr> </tbody> </table>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협력(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 간 협의 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및 민원 대응(1339 콜센터 관리) 검역 인력 보강 및 자원 조정 등 추가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지속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격리입원치료비, 생활지원, 장제지원 등 재정지원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시·도별 환자관리반 운영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p>-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3. 4.24. 개정)에 따른 기관별 임무 업데이트</p>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치료제 지원 관리,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백신연구개발, 효능평가, 치료제 효능평가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협력(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 간 협의 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및 민원 대응(1339 콜센터 관리) 검역 인력 보강 및 자원 조정 등 추가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지속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격리입원치료비, 생활지원, 장제지원 등 재정지원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시·도별 환자관리반 운영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7	<p>2) 시·도 즉각대응팀</p> <p>○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내 시·도 즉각대응팀을 구성(총 5~7명)하고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p> <p>▶ 팀별 인원, 출동순서 및 운영방법 등(반드시 예비팀을 포함하여 계획 마련)</p> <table border="1"> <tr> <td>방역관</td> <td>역학조사</td> <td>현장동체</td> <td>집속자 자료관리</td> <td>행정관리</td> <td>검사관리</td> </tr> <tr> <td>1명</td> <td>1~2명</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d>(1)</td> </tr> </table> <p>▶ 방역관은 시·도지사가 보건정책국 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p> <p>▶ 질병관리청은 관역별로 즉각대응팀(방역관 1명, 역학조사관 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환자관리 자문</p>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동체	집속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p>2) 시·도 즉각대응팀</p> <p>○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내 시·도 즉각대응팀을 구성(총 5~7명)하고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p> <p>▶ 팀별 인원, 출동순서 및 운영방법 등(반드시 예비팀을 포함하여 계획 마련)</p> <table border="1"> <tr> <td>방역관</td> <td>역학조사</td> <td>현장동체</td> <td>집속자 자료관리</td> <td>행정관리</td> <td>검사관리</td> </tr> <tr> <td>1명</td> <td>1~2명</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d>(1)</td> </tr> </table> <p>▶ 방역관은 시·도지사가 보건정책국 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p> <p>▶ 질병관리청은 관역별로 현장대응팀(방역관 1명, 역학조사관 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환자관리 자문</p>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동체	집속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p>용어 수정</p> <p>즉각대응팀 → 현장대응팀</p>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동체	집속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동체	집속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II.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6	3) 시도 환자관리반	3) 시·도 환자관리반 ○ 시·도 환자관리반 등 전담 조직 설치 또는 담당부서 내 전담 인력 배치	- 중수본 조직개편																								
9	<p>◆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p> <p>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p> <p>○ 확진환자</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p>◆ 주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p>	<p>◆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p> <p>②-----(-)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p> <p>○ 확진환자</p> <p>- -----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p> <p>◆ 주의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p>	-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에 따른 용어 삭제																								
	11	○ (의료기관)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의료기관)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	-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에 따른 용어 삭제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p> <p>◆ 주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p>	<p>----- ‘---’ ----- “-----” -- “-----” -----</p> <p>◆ --- :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p> <p>-----</p> <p>-----</p> <p>-----</p>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2	<p>▶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內) : hcr.hira.or.kr [크롬(Chrome) 계열 브라우저 사용]</p> <p>▶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p> <p>▶ 코호트 격리 : 해당 발생지역의 보건소(자가격리)로 입력</p> <p>☞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p>	<p>▶ 코로나19 입원환자관리정보시스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內) : hcr.hira.or.kr [크롬(Chrome) 계열 브라우저 사용]</p> <p>▶ 신고된 확진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만 정보입력(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등)</p> <p>▶ 격리안함, 격리참여자 등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음(본 시스템으로 보건소가 입력하는 정보 없음)</p> <p>▶ 격리참여자 등의 자기입식 역학조사서에 따른 정보관리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관련안내등을 참고</p> <p>▶ 코호트 격리 : 입원환자가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음</p> <p>☞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입원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p>	<p>-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 전환으로 인하여 격리안함/자율입원 등의 정보수집은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정보 수집</p> <p>-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명칭 변경</p>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5	<p>1.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p>1.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모든 해외 입국자 ○ (관리) 내·외국인, 체류기간 등 구분 없이 증상 유무에 따라 관리 	
	2. 일반적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입국 후 3일차 PCR검사 권고 종료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가. 증상별 대응 절차</p> <p>○ 검역단계 유증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219 308 925 379"> <tr> <td>구분</td> <td>진단검사</td> <td>검사 결과</td> <td>조치사항</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219 411 925 587"> <tr> <td>유증상자</td> <td>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td> <td>양성</td> <td>병원 또는 재택 치료</td> </tr> <tr> <td></td> <td></td> <td>음성</td> <td>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td> </tr> </table> <p>○ 검역단계 무증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219 675 925 738"> <tr> <td>구분</td> <td>입국 후 3일 이내 자율 검사</td> <td>격리</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219 770 925 834"> <tr> <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 <td>보건소</td> <td>확진자만 격리</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219 866 925 930"> <tr> <td>단기체류 외국인</td> <td>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자부담)</td> <td>확진자만 격리</td> </tr> </table>	구분	진단검사	검사 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병원 또는 재택 치료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구분	입국 후 3일 이내 자율 검사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p>가. 증상별 검역대응 흐름도</p> <p>○ 검역단계 유증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969 308 1675 379"> <tr> <td>구분</td> <td>PCR 검사</td> <td>검사 결과</td> <td>조치사항</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69 411 1675 603"> <tr> <td>유증상자</td> <td>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td> <td>양성</td> <td>▲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격리 권고 *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 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td> </tr> <tr> <td></td> <td></td> <td>음성</td> <td>무증상자 절차에 따름</td> </tr> </table> <p>○ 검역단계 무증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969 675 1675 730"> <tr> <td>구분</td> <td>PCR 검사</td> <td>조치사항</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69 754 1675 930"> <tr> <td>내국인 /외국인</td> <td>의료기관 (비용 본인부담)</td> <td>확진자 격리 권고</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PCR 검사	검사 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격리 권고 *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 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			음성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구분	PCR 검사	조치사항	내국인 /외국인	의료기관 (비용 본인부담)	확진자 격리 권고			-	
구분	진단검사	검사 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병원 또는 재택 치료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구분	입국 후 3일 이내 자율 검사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구분	PCR 검사	검사 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격리 권고 *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 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																																										
		음성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구분	PCR 검사	조치사항																																											
내국인 /외국인	의료기관 (비용 본인부담)	확진자 격리 권고																																											
		-																																											
16	<p>나. 기관별 역할</p> <p>1) 검역소</p> <p>○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고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p> <p>▶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된 QR코드로 제출서류 확인</p> </div> <p>2) 보건소</p> <p>○ 입국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실시</p> <p>-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p>	<p>나. 검역대응 절차</p> <p>1) 입국단계 조치</p> <p>○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고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p> <p>*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p> </div> <p>(삭제)</p>	<p>-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종료</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p>▶ 자가 및 숙소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권고</p> <p>○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구분하여 PCR 검사 대상자 확인</p> <p>▶ 여권을 확인하여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고, 입국심사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외국인 여부 확인</p> <p>▶ 항공권 등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여부 확인</p>	<p>2) 유증상자 조치 (추가)</p> <p>○ (유증상자 기준)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모든 해외 입국자</p> <p>○ (유증상자 검역조사)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p> <p>* 채취된 검체 검사는 관할 질병대응센터에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p> <p>-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p> <p>- 상태가 경증인 경우,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p> <p>3) 무증상자 조치</p> <p>○ (내국인·외국인)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비용 자부담)</p> <p>- (양성) ▲자택,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p> <p>- (음성) 별도 조치 불요</p>	
16	<p>3.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p> <p>가. 병상배정 요청</p> <p>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p> <p>○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p>	<p>3.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p> <p>가. 병상배정 요청</p> <p>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p> <p>○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p>	-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17	3.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3.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참고자료 수정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보건소)</p> <p>▶ 그 외 병상 배정 및 자율치료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적용</p> <p>4. 격리해제</p> <p>▶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의2. 자기격리자 운영 방안 → 바. 자기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적용</p> <p>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p> <p>○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원칙</p> <p>▶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 격리 입소시설에 격리(유료)</p>	<p>○ (보건소)</p> <p>▶ 그 외 병상 배정 및 자율치료 사항은 “V. 확진환자 관리 적용</p> <p>4. 격리해제</p> <p>▶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관리 → 3. 자율격리 운영방안 적용</p> <p>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p> <p>○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자가 또는 숙소 등에서 격리 권고</p> <p>▶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 권고(비용 자부담)</p>	<p>- 격리해제 삭제</p> <p>- 5일 격리 권고 전환 반영</p>
V. 확진환자 대응방안			
19	<p>추가</p>	<p>가. 양성 확인 통보</p> <p>○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양성 확인 통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p> <p>- 양성 확인 통지 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p> <p>▶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p> <p>○ 권고 격리 기간</p> <p>-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24시)</p> <p>○ 안내사항</p> <p>-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p> <p>-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p> <p>- 격리 이행 확인 절차 안내</p> <p>-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안내</p> <p>▶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메시지의 예시는 “V. 확진환자 관리 → 3.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 나. 격리 권고” 참고</p>	<p>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격리 권고 전환)로 격리 통지 중단 및 양성 확인 통보로 전환</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19		<p>나. 환자 관리</p> <p>○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김체취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6일 차 0시)까지 격리 권고</p> <p>▶ (예시) 11.1. 김체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5. 24:00까지 격리 권고</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p> <p>○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성을 고려함</p> <p>○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p> <p>▶ (참고문헌) Kim J-M, Kim D, Kim E-J.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 Public Health Wkly Rep 2022;15(14):871-2.</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p>※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p> </div> </div> <p>○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합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p>▶ 상세사항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조</p> </div> <p>○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p> </div> <p>※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상세사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참조</p> </div>	<p>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격리 권고 전환)로 확진자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p>
19	나. 환자 초기 분류	삭제	- 재택치료가 기본 디폴트값이 되고 지정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요양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병상이송을 우선 함 <p>▶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p> <p>○ 초기 분류는 확진자 조사서와 선별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 환자관리반이 아래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p> <p>📖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p> <p>[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p>▶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p> <p>◆ 재택 환자의 격리기간 모니터링은 상기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모니터링하고, 병상 배정이 필요한 경우 병상 배정 절차에 따름</p>		<p>격리병상 수 축소, 일반격리병상 등 일반의료체계 이용이 증가하면서 현재 병상배정 대상자를 초기분류하여 선별하는 절차는 없어진 상태임</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20-22	<p>다. 병상 배정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한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와 그에 따른 치료병상을 분류하며,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시·도배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자율입원) -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와 병원장 협의 하에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 잔류하여 치료 가능 ○ (배정원칙) 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등 진료를 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자율입원 및 배정 절차 개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중환자용)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에어로졸 상황)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악화인자▶를 지니고, 단기간 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소견서나 의뢰서 필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기저질환, 호흡기 기저질환, 복합만성질환(당뇨·고혈압), 만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 </div> ○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이 어려울 경우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 의뢰하여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병상 배정을 추진 	<p>나. 병상 사용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이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증상 또는 감염으로 인해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격리병상 입원 - 기저질환 또는 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필요시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 입원(자율입원) ○ (입원필요성판단)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행위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처치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한 경우(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 충족)를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기준 충족 사례에 대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을 참고하여 중증도를 분류함 - 입원기준을 충족하였다도 실제 중증도에 맞게 병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퇴실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 분류 기준 상 중등증▶ 이상의 코로나19 증상 치료행위(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산소치료 또는 산소마스크 사용 </div> ○ 처치 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에어로졸 상황)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p>(전문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을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 대비 의료기관 자율 수용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상 배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 병상 사용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 중증 환자 전원시 지자체가 전원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 이전의 지정격리병상 입원기준이 사실상 모든환자가 입원가능한 포괄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었으나, 지정격리병상 수 감소로 병상 수가 한정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입원시키는 환자 상태에 준하는 입원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 (단, 전문가 학협회에서 자문한 중증도 분류기준, 병상별 입실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준수함)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코로나19 중양/권역공동대응상황실 및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입소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방침임을 기 안내(2020.8.24. / 2020.12.22. / 2021.12.13.)</p> <p>▶ 병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을 통한 병상배정 안내(2022.6.22.)</p> <p>○ 응급상황 등 긴급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정 절차없이, 확진자를 자체수용 가능(2022.2.21./2022.3.14.)</p> <p>- 수용경로는 다음▶으로 제한하며 자체수용 결과를 보건소에 사후보고해야 함</p> <p>▶ 응급실 경유 환자</p> <p>▶ 거점전담병원(분만특화, 소화특화 거점전담병원 포함)에서 대면진료한 특수환자(투석, 소아, 임산부, 요양시설 입소자)</p> <p>〈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p>	<p>〈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958 252 1686 906"> <thead> <tr> <th data-bbox="958 252 1014 347">단계</th> <th data-bbox="1014 252 1556 347">정의</th> <th data-bbox="1556 252 1686 347">중증도 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58 347 1014 403">1</td> <td data-bbox="1014 347 1556 403">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td> <td data-bbox="1556 347 1686 496" rowspan="2">경증 이하</td> </tr> <tr> <td data-bbox="958 403 1014 496">2</td> <td data-bbox="1014 403 1556 496">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td> </tr> <tr> <td data-bbox="958 496 1014 552">3</td> <td data-bbox="1014 496 1556 552">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td> <td data-bbox="1556 496 1686 608" rowspan="2">중등증</td> </tr> <tr> <td data-bbox="958 552 1014 608">4</td> <td data-bbox="1014 552 1556 608">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td> </tr> <tr> <td data-bbox="958 608 1014 711">5</td> <td data-bbox="1014 608 1556 711">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td> <td data-bbox="1556 608 1686 847" rowspan="2">위중증</td> </tr> <tr> <td data-bbox="958 711 1014 767">6</td> <td data-bbox="1014 711 1556 767">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td> </tr> <tr> <td data-bbox="958 767 1014 847">7</td> <td data-bbox="1014 767 1556 847">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td> <td data-bbox="1556 847 1686 906" rowspan="2">사망</td> </tr> <tr> <td data-bbox="958 847 1014 906">8</td> <td data-bbox="1014 847 1556 906">사망(death)</td> </tr> </tbody> </table> <p>▶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대한중환자의학회)</p> <p>○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①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②,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③</p> <p>①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p> <p>② (예)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p> <p>③ (예) 폐렴이 확인되었고,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p> <p>○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p>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사망	8	사망(death)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사망																								
8	사망(death)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08 220 253 308">단계</th> <th data-bbox="264 220 808 308">정의</th> <th data-bbox="808 220 936 308">중증도 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08 308 253 363">1</td> <td data-bbox="264 308 808 363">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td> <td data-bbox="808 308 936 363" rowspan="2">경증 이하</td> </tr> <tr> <td data-bbox="208 363 253 459">2</td> <td data-bbox="264 363 808 459">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td> </tr> <tr> <td data-bbox="208 459 253 515">3</td> <td data-bbox="264 459 808 515">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td> <td data-bbox="808 459 936 515" rowspan="2">중등증</td> </tr> <tr> <td data-bbox="208 515 253 571">4</td> <td data-bbox="264 515 808 571">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td> </tr> <tr> <td data-bbox="208 571 253 675">5</td> <td data-bbox="264 571 808 675">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td> <td data-bbox="808 571 936 675" rowspan="3">위중증</td> </tr> <tr> <td data-bbox="208 675 253 722">6</td> <td data-bbox="264 675 808 722">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td> </tr> <tr> <td data-bbox="208 722 253 818">7</td> <td data-bbox="264 722 808 818">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td> </tr> <tr> <td data-bbox="208 818 253 874">8</td> <td data-bbox="264 818 808 874">사망(death)</td> <td data-bbox="808 818 936 874">사망</td> </tr> </tbody> </table>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p>▶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p> <p>○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환자실에서 급성기치료 후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 (step-dow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비강캐놀라 O2 5리터/분 이하에서 SpO2≥94%로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중인 환자 중 집중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step-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성호흡부전으로 고유량산소요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주치의가 준중환자실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진자 중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한 치료/평가가 필요한 경우 <p>※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p> <p>○ (입원절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일반의료체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병상으로 자체 수용, 그 외 사례는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으로 수용 지정격리병상 미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에 직접 전원 의뢰 가능 <p>○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지정격리병상에 자체수용한 확진자 현황을 사후 모니터링▶하여 병상 상황을 관리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즉시 실시간 보고 또는 일일 보고 등 각 지자체별 모니터링 방침 제정 - 중증 환자의 의료기관 간 전원이 필요할 경우 전원 지원 - 병상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 공동 모니터링 및 대 </p> </p>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p>▶ 지정격리병상 배정 시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확진자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이 필요한 주요한 요인 및 지정격리병상 입원기준을 적용</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대한중환자의학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①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②,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 ② (예)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 ③ (예) 폐렴이 확인되었고,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hr/> <p>▶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환자실에서 급성기치료 후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 (step-dow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비강캐놀라 O₂ 5리터/분 이하에서 SpO₂≥94%로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2.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중인 환자 중 집중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step-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호흡부전으로 고유량산소요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치의가 준중환자실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 중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한 치료/평가가 필요한 경우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hr/> <p>▶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p>	<p>응 등의 방안 필요</p>	
23-24p	<p>라.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 확인) 문진의사의 대면·비대면 등 진료 후 판단 소견에 	<p>삭제</p>	<p>-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의료기관 자율입원, 자체수용하도록</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따라 중증도 확인</p> <p>▶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p> <p>📖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배정)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환자이송)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에서 병상 배정을 통보 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p>▶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p> <p>📝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p> <p>2) 시·도 환자관리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확인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p>▶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참여 의향을 확인한 경우, 병상 상황 파악 후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p>📖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p> <p>[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p> <p>①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음압병상 ↔ 1인 병상) 등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p>변경하여 해당내용 삭제</p> <p>- 환자관리반의 역할은 <u>나. 병상사용 원칙</u>으로 이동하여 기재함</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증상 호전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에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p> <p>▶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 병원 등</p> <p>○ (증상 악화 시) 진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p> <p>▶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에 제공</p> <p>② 보건소</p> <p>○ (환자이송) 병상 배정 또는 전원 협의를 통보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p> <p>○ (병상배정요청) 의료기관의 전원 요청을 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 단, 증상 호전으로 인한 전원 시에는 의료기관 간 전원 협의가 있을 경우, 배정 요청없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 통보</p> <p>▶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p> <p>▶ 전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입원통지서 재발급(장소변경 명시)</p> <p>▶ “Ⅷ. 자원관리 → 2. 병상 배정 및 운영 원칙 / 3. 이송” 참고</p> <p>③ 시·도 환자관리반</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확인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25	2. 확진환자 격리해제	삭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해제 기준 삭제
29	<p>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p> <p>가.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p>나.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사항은 매뉴얼 참고 <p>참고자료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검사·조사·평가 매뉴얼</p>	<p>3. 확진자 조사</p> <p>가.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PHEIC 해제('23.5.5) 및 국내 위기단계하향에 따라 5일 격리권고 전환으로 확진자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 개편 <p>나.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사항은 매뉴얼 참고 <p>참고자료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검사·조사·평가 매뉴얼」 참조</p>	<p>5일 격리 권고에 따른 수정</p> <p>부록 40 삭제에 따라 기존 매뉴얼 참조</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다. 용어정의</p> <table border="1" data-bbox="212 384 938 1121"> <thead> <tr> <th data-bbox="212 384 427 461">용어</th> <th data-bbox="427 384 938 461">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12 461 427 592">조사대상 접촉자</td> <td data-bbox="427 461 938 592">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 </tr> <tr> <td data-bbox="212 592 427 687">격리대상 접촉자</td> <td data-bbox="427 592 938 687">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 </tr> <tr> <td data-bbox="212 687 427 858">수동감시</td> <td data-bbox="427 687 938 858">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td> </tr> <tr> <td data-bbox="212 858 427 1029">격리</td> <td data-bbox="427 858 938 1029">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td> </tr> <tr> <td data-bbox="212 1029 427 1121">자율관리</td> <td data-bbox="427 1029 938 1121">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td> </tr> </tbody> </table>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p>다. 용어정의</p> <table border="1" data-bbox="963 347 1686 1082"> <thead> <tr> <th data-bbox="963 347 1178 424">용어</th> <th data-bbox="1178 347 1686 424">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63 424 1178 555">조사대상 접촉자</td> <td data-bbox="1178 424 1686 555">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 </tr> <tr> <td data-bbox="963 555 1178 651">격리대상 접촉자</td> <td data-bbox="1178 555 1686 651">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 </tr> <tr> <td data-bbox="963 651 1178 821">수동감시</td> <td data-bbox="1178 651 1686 821">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td> </tr> <tr> <td data-bbox="963 821 1178 992">격리</td> <td data-bbox="1178 821 1686 992">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td> </tr> <tr> <td data-bbox="963 992 1178 1082">자율관리</td> <td data-bbox="1178 992 1686 1082">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td> </tr> </tbody> </table>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5일 격리 권고 전환으로 전체 삭제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30	<p>라. 확진자 조사</p> <p>○ (조사주체)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p> <p>▶ -----</p> </div> <p>○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등을 조사</p> <p>○ (조사방식) -----</p>	<p>다. 확진자 조사</p> <p>○ (조사주체)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p> <p>▶ -----</p> </div> <p>○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등을 조사</p> <p>○ (조사방식) -----</p>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접촉자 관리 방식에서 삭제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p> <p>관련서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p> <p>마. 접촉자 관리 기준</p> <p>○ 확진자의 동거인</p> <table border="1" data-bbox="215 427 929 101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구분</td> <td>○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td> </tr> <tr> <td>관리 방식</td> <td>○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td> </tr> <tr> <td>검사 권고기준</td> <td>○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미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td> </tr> <tr> <td>권고 수칙</td> <td>○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미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p>-----</p> <p>관련서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p> <p>라. 접촉자 관리 기준</p> <p>○ (삭제)</p> <table border="1" data-bbox="965 427 1680 101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구분</td> <td>○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td> </tr> <tr> <td>관리 방식</td> <td>○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td> </tr> <tr> <td>검사 권고기준</td> <td>○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미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td> </tr> <tr> <td>권고 수칙</td> <td>○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미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p>5일 격리 권고에 따라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기준 삭제</p>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미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미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31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p> <table border="1" data-bbox="215 1066 929 1393">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구분</td> <td>○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력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td> </tr> <tr> <td>관리 방식</td> <td>○ 격리조치 : 7일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td> </tr> <tr> <td>검사 기준</td> <td>○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td> </tr> <tr> <td>권고 수칙</td> <td>○ 「자기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력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관리 방식	○ 격리조치 : 7일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검사 기준	○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	권고 수칙	○ 「자기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p> <p>- (감염취약시설) 시설정보 및 확진자 기초정보 등 수집 공유, 확진자 발생 보고(관리부서, 보건소). - (시도/시군구) 감염취약시설(3종) 전담관리를 위한 현 구성원 합동전담대응팀 지속 운영.</p> <p>▶ (행시)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력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 방역물자 지원 등 ▶ (대규모 집단발생/확진자 지속발생)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 역학정보 등록 및 관리, 시도 지원 요청 및 시설 지원 관리계획 마련 등 ▶ 지자체 판단과 역량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시 대응 방안 부록 36 참고</p> <p>참고자료 [부록 36]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 시 참고사항</p>	<p>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관리방안 개편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지자체 전담대응팀 대응</p> <p>마. 접촉자 관리 기준 통합</p>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력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관리 방식	○ 격리조치 : 7일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검사 기준	○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																						
권고 수칙	○ 「자기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업무</p> <p>○ ----- -----</p> <p>▶ ----- -----</p> <p>-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격리관리</p> <p>사. 격리 방식</p> <p>▶ ----- -----</p> <p>○ ----- -----</p> <p>(이하 생략)</p> <p>○ ----- ----- -----</p> <p>▶ -----</p>	<p>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업무 (전체 삭제)</p> <p>○ ----- -----</p> <p>▶ ----- -----</p> <p>-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격리관리</p> <p>사. 격리 방식 (전체 삭제)</p> <p>▶ ----- -----</p> <p>○ ----- ----- -----</p> <p>(이하 생략)</p> <p>○ ----- ----- -----</p> <p>▶ -----</p>	<p>시군구, 보건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 대응팀 구성 운영</p> <p>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접촉자 관리 방안 삭제</p>
31	<p>3의2. 자가격리자 운영방안</p> <p>◆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 제79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p> <p>◆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도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p> <p>가. 자가격리 대상자</p> <p>○ 확진자(재택치료 환자에 한함)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p>	<p>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p> <p>가. 격리 권고 대상</p> <p>○ 확진자로 양성 확인 통지를 -----</p>	<p>격리 권고 전환</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격리해제 후 재검출 또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격리통지 및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p> <p>▶ 감염취약시설 3종</p> <p>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p> <p>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p> <p>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p> <p>○ 자가격리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공동격리를 신청하고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p> <p>나. 격리통지 방법</p> <p>○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p> <p>▶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전략)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p> <p>▶ 사진, PDF 형태의 입원·격리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p> <p>-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입원·격리통지서 발급</p> <p>▶ ‘22.4.11. 이후 통지된 자가격리의 입원·격리통지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p>	<p>나. 격리 권고</p> <p>○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자율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안내 제공</p>	<p>격리 권고 전환</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 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안내문 또는 안내문 확인 URL 링크를 반드시 함께 제공 	<p>[양성 확인 통지 문자 예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통지 이외의 상황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0-00 ~ 2023-00-00 24:00 기간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제출 후 수정 불가) 2.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위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OOO 보건소 전화(000-000-0000) 및 방문(대리가능)을 통해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권고에 따른 격리를 이행할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공동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격리참여자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입원자의 경우 입원확인서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위한 격리참여자 등록 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jaj 6. 확진자의 동거인 등(일점접촉자)은 본 문자를 공유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격리 권고 전환</p>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 서식의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권고 ○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2단계 문자 통지로 같음 <p>▶ (1단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음·양성확인 통보 (2단계) 보건소의 격리통지(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포함)</p>	<p>다.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p> <p>▶ 격리참여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나, 격리 종료 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불응 확진자 대상 보건소 역학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p>격리 권고 전환</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격리통지 문자 예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통지 이외의 상황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으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 제출 후 수정 불가) 격리대상자: 000 격리기간: 2022-06-20 ~ 2022-06-26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취임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격리장소: 자기(입원환자는 병원) 통지기관: 000 000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000-000-0000)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었다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44y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및 앱)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예,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jaz <p>다. 자가격리 방법</p> <p>▶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장소)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현재 거주지에서 격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운영 예비시설 등 입소 ○ (격리방법)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반드시 소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p>▶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및 지자체가 인정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 가능</p> <p>▶ 공동격리참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p> <p>라. 격리참여자 명부 등록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역학조사 부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불응 확진자 대상 역학조사 수행시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보건소 격리관리 부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및 역학조사에서 신청·등록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격리참여자관리」 항목에서 격리참여자 명부 확인, 전화 신청자 추가 등록 및 명부의 모든 격리참여자에게 등록 확인 문자 발송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 예) 귀하는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격리참여자는 격리기간 동안 ①병·의원 방문, ②의약품 구매·수령, ③임종, ④장례, ⑤시험, ⑥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 무단 외출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불가합니다.</p> <p>※ 보건소 격리관리 부서는 격리참여자 본인 및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명부 확인 등의 증빙을 제공</p> <p>마.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장소 및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p> <p>- 가급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을 권장하며,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권장</p> <p>*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원,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실시(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코로나19 채택치료 수가 종료 및 시범사업 수가 적용 등)</p> <p>◆ 자율치료(구 채택치료) 의료상담센터</p> <p>- (개요) 자율치료를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p> <p>*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p> <p>** 광역자치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지정하여 운영</p> <p>-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p> <p>▪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p> <p>*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p> <p>**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p> <p>- (기능) 자율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약은 치료제 등),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p> <p>◆ 자율치료(구 채택치료) 행정안내센터</p> <p>- (개요) 자율치료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지자체 지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p> <p>- (운영시간) 자율 설정</p> <p>-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 대응,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 상황 대응 위한 의료기관 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p> <p>▶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p> <p>-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p> <p>▶ 확진자의 시험응시 및 투표 참여는 별도 지침(문서)에 따름</p> <p>▶ 격리 중 생필품 구입은 가급적 온라인 구매 및 배달 이용을 권장</p>	
33	<p>○ (이탈방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관할 보건소의 허가없이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p> <p>▶ 격리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p> <p>○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은 자제할 것을 권고</p> <p>○ (공동격리) 자가격리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음</p>	삭제	격리 권고 전환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그 외에 자가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공동격리 가능</p> <p>[공동격리 관련 주의사항]</p> <p>①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p> <p>② 공동격리자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격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격리하며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함</p> <p>▶ 공동격리자가 격리수칙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p> <p>③ 공동격리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해서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p> <p>○ (격리장소 외부인 방문)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p> <p>-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p> <p>- 방문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p> <p>▶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의 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p> <p>라. 일시 외출</p> <p>○ (확진 자가격리자 허용 외출) 확진 자가격리자는 ① 코로나19 및 일반진료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발인에 한함)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p>	삭제	격리 권고 전환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확진자가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어야 함.</p> <p>▶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임종) 의료기관 등 임종 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됨 - (장례)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실외)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됨(중앙방역대책본부 -27897, 2022.9.23. 참조) 	삭제	격리 권고 전환
34	<p>※ 장례 중 발인 참석과 관련하여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격리해제 이후로 장례식 연기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p> <p> 관련서식 [부록 41]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을 위한 안내문</p> <p>○ (비확진 자가격리자 허용 외출)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공동격리자 등(이하 비확진 자가격리자)은 필수적 목적에 한하여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 후 외출이 허용되나(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의 우선 활용을 권고</p> <p>▶ (필수적 목적)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및 진단키트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임종 등</p> <p>○ (시험응시, 투표)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또는 투표 지침(문서)에 따라 조치</p> <p>○ (코로나19 이외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p>	삭제	격리 권고 전환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적용</p> <p>▶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p> <p>마.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p> <p>○ 비확진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신청서 작성), 장례기간 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격리해제를 허가함(해제서 발부)</p> <p>관련서식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p> <p>▶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장례(발인, 삼우제 등 포함)</p> <p>- 확진 자가격리자는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미적용(발인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 허용)</p> <p>바. 자가격리 기간 및 검사</p> <p>○ (확진자)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 자동 기재</p>	<p>13-3판 개정(안)</p> <p>바. 권고에 따른 격리기간</p> <p>○ (격리참여자)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기재된 격리기간</p> <p>▶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 (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를 자율격리 기간으로 함</p> <table border="1" data-bbox="1016 1098 1668 1294"> <thead> <tr> <th>구분</th> <th>격리시작일</th> <th>격리종료일</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소 검사 건</td> <td>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td> <td>검체채취일 + 4일</td> </tr> <tr> <td>의료기관 RAT검사▶ 건</td> <td>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td> <td>진단일 + 4일</td> </tr> </tbody> </table> <p>▶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p> <p>○ (공동격리참여자)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격리종료시까지</p>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 건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4일	의료기관 RAT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 4일	<p>격리 권고 전환</p>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 건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4일										
의료기관 RAT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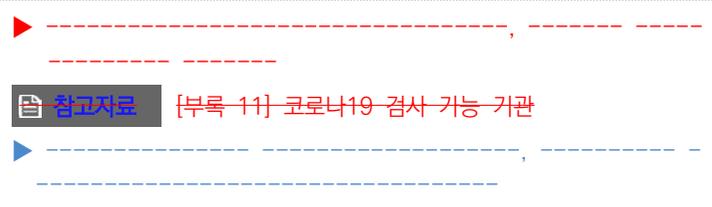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 (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p> <table border="1" data-bbox="264 368 931 564"> <thead> <tr> <th>구분</th> <th>격리시작일</th> <th>격리종료일</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소 검사 건</td> <td>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td> <td>검체채취일 + 6일</td> </tr> <tr> <td>의료기관 RAT검사▶ 건</td> <td>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td> <td>진단일 + 6일</td> </tr> </tbody> </table> <p>▶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p> <p>○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p> <p>○ (공동격리자)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격리종료시까지</p> <p>▶ 기타 사유로 격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에 명시한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봄</p>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 건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6일	의료기관 RAT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 6일	<p>삭제</p>	<p>격리 권고 전환</p>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 건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6일										
의료기관 RAT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 6일										
35	<p>○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무)는 접촉자 분류시 PCR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PCR검사 - 공동격리자(권고)는 가구 내 확진 자가격리자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 PCR검사 권장) 	<p>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신청 기한)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 이내 신청 ○ (지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p>격리 권고 전환</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p> <p>*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p> <div data-bbox="972 363 1668 699"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weight: bold;">[격리침ैया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 padding: 5px;">격리침ैया자</td> <td style="width: 15%; padding: 5px;">격리 권고</td> <td style="width: 15%; padding: 5px;">격리침ैया자 등록 신청</td> <td style="width: 15%; padding: 5px;">격리침ैया자 명부 등록</td> <td style="width: 15%; padding: 5px;">지원 신청</td> </tr> <tr> <td style="padding: 5px;">확진자</td> <td style="padding: 5px;">양성 확인 문자</td> <td style="padding: 5px;">확진자 자기입식 역학조사서 URL 신청</td> <td style="padding: 5px;">보건소에서 등록 확인 문자 발송</td> <td style="padding: 5px;">(생활지원비) 정부24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td> </tr> <tr> <td style="padding: 5px;">공동격리자</td> <td></td> <td style="padding: 5px;">전화 방문 역학조사서 신청</td> <td></td> <td style="padding: 5px;">(유급휴가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td> </tr> <tr> <td></td> <td></td> <td style="padding: 5px;">보건소에 전화 및 방문 신청</td> <td></td> <td></td> </tr> </table> </div> <div data-bbox="1037 799 1684 954"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5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5판」의 규정을 따름</p> </div>	격리침ैया자	격리 권고	격리침ैया자 등록 신청	격리침ैया자 명부 등록	지원 신청	확진자	양성 확인 문자	확진자 자기입식 역학조사서 URL 신청	보건소에서 등록 확인 문자 발송	(생활지원비) 정부24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격리자		전화 방문 역학조사서 신청		(유급휴가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보건소에 전화 및 방문 신청			<p>격리 권고 전환</p>
격리침ैया자	격리 권고	격리침ैया자 등록 신청	격리침ैया자 명부 등록	지원 신청																			
확진자	양성 확인 문자	확진자 자기입식 역학조사서 URL 신청	보건소에서 등록 확인 문자 발송	(생활지원비) 정부24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격리자		전화 방문 역학조사서 신청		(유급휴가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보건소에 전화 및 방문 신청																					
37~ 41	<p>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 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4. 확진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및 발생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확진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 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5일 격리 권고에 따라 자구 수정 및 삭제</p> <p>PCR검체로 실시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재감염 확정은 필수사항이 아님을 반영</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p> <p>※ (주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무증상자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2차 PCR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p> <p>(위치 이동 및 자구 수정)</p> <p>나. 조사 및 관리체계 (이하 생략)</p> <p>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이하 생략)</p> <p>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 ----- (이하 생략)</p>	<p>▶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p> <p>※ (주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무증상자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재감염 확정) 필요시, 재감염 추정사례 중 1,2차 PCR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확인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 (발생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 선택 후 보고</p> <p>▶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확진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p> <p>나. 조사 및 관리체계 → 전체 삭제 (이하 생략)</p> <p>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전체 삭제 (이하 생략)</p> <p>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 → 전체 삭제 (이하 생략)</p>	<p>재감염 추정사례는 사례정의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보고 삭제 재검출/재감염 사례에 대한 조사, 검토, 평가, 판정의 과정 중단에 따른 삭제</p>
41	<p>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황</p> <p>▶ 「2022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안내」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참조</p>	<p>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황</p> <p>▶ 「2023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안내」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참조</p>	<p>- 변경된 「2023년 감염병 관리사업안내」에 따라 수정</p>

Ⅵ. 실험실 검사 관리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47	<p>4. 검사기관</p> <p>가. 의료기관</p> <p>○ (유전자검사)</p> <p>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p> <p>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p>○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의료기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p> <p>▶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 불가</p> <p>①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검사법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p> <p>②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생략된 검사법의 경우, 진단검사전문의를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p>	<p>4. 검사기관</p> <p>가. 의료기관</p> <p>○ (-----)</p> <p>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p>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p> <p>○ (-----) 응급의료기관</p> <p>▶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 불가</p> <p>① 삭제</p> <p>② 삭제</p>	<p>-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기관 요건 변경(23.3.1.) 반영(중앙방역대책본부-2490, 23.2.13.)</p>
49	<p>5. 검사 결과 보고 및 관리</p> <p>가. 의료기관</p> <p>2) 응급용 선별검사</p> <p>○ (양성인 경우)</p> <p>①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p> <p>②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유전자검사) ▶ 추가 실시</p> <p>-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확진환자 신고</p> <p>▶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p> <p>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p>▶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24시간 이내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p>	<p>5. --- -- -- --</p> <p>가. ----</p> <p>2) --- ----</p> <p>○ (--- --)</p> <p>① -----, -----</p> <p>② --- -- -- ----, 확진검사(유전자검사) ▶ 추가 실시</p> <p>-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 시에 한하고,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확진환자 신고</p>	<p>-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및 검사기관 지정 중단 반영</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50	라. 주의 사항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라. 주의 사항 ○ <삭제>	- 지을 격리 전환 반영
Ⅶ. 환경관리(소독·환기)			
53	<p>◆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나 환자 거주 공간은 신속하게 소독 시행 ○ 일상적인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의 예방적 소독 시행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소독 시행 <p>(신설)</p> <p>(이하 생략)</p>	<p>◆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나 환자 거주 공간은 신속하게 소독 시행 ○ 일상적인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의 예방적 소독 시행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소독 시행 <p>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p> <p>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지침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 「슬기로운 환기수칙-공기청정기편」 <p>(이하 생략) → 전체 삭제</p>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별도 매뉴얼 참고 삭제
55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독 -「~~」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독 -「~~」 -「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 」	종료로 인한 삭제
Ⅷ. 자원 관리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57p	<p>1. 시도 병상배정 관리체계 구축</p> <p>○ (개요) 시·도는 지역 내 병원의 가용병상,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신설 및 감염관리 기능 강화</p> <p>- 시·군·구는 확진환자 중증도 평가기능을 갖추고 고령자, 만성 질환자 등 위험 요인 보유자를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p> <p>○ (자원 파악) 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 특수병상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 파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외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공공병원(국립병원, 군병원, 경찰병원, 지방의료원), 준공공병원(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에 대한 파악 필요</p> <p>▶ 특수환자(투석, 분만산모, 신생아, 소아, 정신질환자, 고령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병상 파악·안내 필요</p> <p>▶ 장비 : ECMO(체외막 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CRRT(지속적 신대체 용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 보유의료기관 및 개수</p> </div> <p>- 수요 발생시 즉시 사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계획수립 병행 필요</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군인(현역 장병 등)이 확진환자로 분류된 경우</p> <p>-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1688-5119, 031-725-5119)로 연락하여 국군수도병원 및 국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군병원에 병상 배정 및 격리입원 조치 (단, 군병원 병상 제한시 발생부대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p> </div>	<p>1. 시도 병상 배정 및 자원 관리체계 구축</p> <p>○ (개요) 시도 담당부서는 지역 내 병원의 가용병상,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을 활용하기 위해 환자관리반 등 전담팀 운영 또는 전담인력 배치</p> <p>- 시·군·구는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p> <p>○ (자원 파악) 시도 담당부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현황 파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외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공공병원(국립병원, 군병원, 경찰병원, 지방의료원), 준공공병원(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일반병상에 대한 파악 필요</p> <p>▶ 특수환자(투석, 분만산모, 신생아, 소아, 정신질환자, 고령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병상 파악·안내 필요</p> <p>▶ 장비 : ECMO(체외막 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CRRT(지속적 신대체 용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 보유의료기관 및 개수</p> </div> <p>- 수요 발생시 즉시 사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계획수립 병행 필요</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군인(현역 장병 등)이 확진환자로 분류된 경우</p> <p>-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1688-5119, 031-725-5119)로 연락하여 조치</p> </div>	<p>- 중수분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을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 대비 의료기관 자율 수용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상 배정이 아닌 병상 관리 체계 관련 내용으로 변경</p> <p>-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내용 수정</p>
57p	<p>2. 병상 배정 및 운영 원칙</p> <p>○ (지정격리병상)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증상 치</p>	<p>2. 병상 운영 원칙</p> <p>○ (지정격리병상)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증상 치</p>	<p>- 확진환자 대응방안에서 제시한 병상 사용 기준과 합치되도록 조정</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격리병상기준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여 의료진 진료 시행</p> <p>○ (일반격리병상)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확진환자 자율입원을 통해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 독립적인 병동단위 운영 가능</p> <p>▶ (공조시설) 외기(30%)와 내기(70%) 혼합 순환방식에서 외기 100%로 급기하는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p> <p>○ (입원대기 중 조치) 해당 지자체는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운영</p>	<p>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격리병상 입원기준 충족 시 사용 가능</p> <p>- 확진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적정 병상 사용</p> <p>-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환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1인실) 등 격리 가능 병상을 우선 사용</p> <p>- 지정격리병상 사용 현황에 대한 의료기관 사후보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p>	<p>-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내용 수정</p>
58p	<p>3. 이송</p> <p>○ 구급차를 사용한 이송이 필요한 확진자에 대해서만 병상으로 이송 지원, 그 외 확진자는 방역수칙 준수하여 자차이동</p> <p>○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p> <p>○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p> <p>▶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p> <p>☞ 참고자료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p> <p>○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일회용 장갑) 착용</p> <p>▶ 단,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1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p>	<p>3. 이송</p> <p>○ 구급차를 사용한 이송이 필요한 확진자에 대해서만 병상으로 이송 지원, 그 외 확진자는 방역수칙 준수하여 자차 이동 가능</p>	<p>-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내용 수정(모두 자차이동하는 것이 아님)</p> <p>- 격리무 해제에 따른 감염전파관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이송요원에 방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선 삭제</p>
서식			
66			<p>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3. 동거인 정보 삭제 → (사유) 5일 격리 권고 전환에</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70	<p>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접촉자명</th> <th>주민등록번호</th> <th>성명</th> <th>주소</th> <th>생년월일</th> <th>접촉자구분</th> <th>관리구분</th> <th>내원일</th> <th>출력</th> <th>접촉일</th> <th>연락처</th> <th>주말_도입일(확고일)</th> <th>주말입수일</th> <th>입실확자여부</th> <th>접촉유형</th> <th>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남</td> <td>710101-1234567</td> <td>[1남자]</td> <td>서울 리브 상수출</td> <td>11-12</td> <td>[1초점]</td> <td>[1지역관리]</td> <td>Y</td> <td>남</td> <td>010-1234-2343</td> <td>0212341234</td> <td>00</td> <td>20180930</td> <td>Y</td> <td>[1동접]</td> <td>Y</td> </tr> <tr> <td>2</td> <td>남</td> <td>710102-1234567</td> <td>[1남자]</td> <td>서울 리브 상수출</td> <td>11-13</td> <td>[4가족]</td> <td>[1방출관리]</td> <td>Y</td> <td>남</td> <td>010-1234-2343</td> <td>0212341234</td> <td>00</td> <td>20180930</td> <td>Y</td> <td>[1동접]</td> <td>Y</td> </tr> <tr> <td>3</td> <td>남</td> <td>010101-7000000</td> <td>[1남자]</td> <td>서울 리브 상수출</td> <td>11-14</td> <td>[외국포기환환시자]</td> <td>[1지역관리]</td> <td>N</td> <td>중문</td> <td>010-1234-2343</td> <td>0212341234</td> <td>00</td> <td>20180930</td> <td>Y</td> <td>[1동접]</td> <td>Y</td> </tr> <tr> <td>4</td> <td>남</td> <td>010103-3234567</td> <td>[1남자]</td> <td>서울 리브 상수출</td> <td>11-13</td> <td>[4가족]</td> <td>[1종출입관리]</td> <td>Y</td> <td>남</td> <td>010-1234-2343</td> <td>0212341234</td> <td>00</td> <td>20180930</td> <td>Y</td> <td>[1동접]</td> <td>Y</td> </tr> </tbody> </table> <p>남: 반드시 불 알식자로 열람파일(시스템) 접촉자 열실 목록 > 열실 알식(리브)로 과검색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감염발원지관리분지침」에 합치함</p>	연번	접촉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접촉자구분	관리구분	내원일	출력	접촉일	연락처	주말_도입일(확고일)	주말입수일	입실확자여부	접촉유형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	1	남	710101-1234567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2	[1초점]	[1지역관리]	Y	남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2	남	710102-1234567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3	[4가족]	[1방출관리]	Y	남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3	남	010101-7000000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4	[외국포기환환시자]	[1지역관리]	N	중문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4	남	010103-3234567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3	[4가족]	[1종출입관리]	Y	남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p>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삭제)</p>	<p>5일 격리 권고에 따라 접촉자 조사 삭제</p>
연번	접촉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접촉자구분	관리구분	내원일	출력	접촉일	연락처	주말_도입일(확고일)	주말입수일	입실확자여부	접촉유형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																																																																								
1	남	710101-1234567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2	[1초점]	[1지역관리]	Y	남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2	남	710102-1234567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3	[4가족]	[1방출관리]	Y	남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3	남	010101-7000000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4	[외국포기환환시자]	[1지역관리]	N	중문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4	남	010103-3234567	[1남자]	서울 리브 상수출	11-13	[4가족]	[1종출입관리]	Y	남	010-1234-2343	0212341234	00	20180930	Y	[1동접]	Y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p> <p>집단사례조사서 (월일-시·도-시·군·구-사례명)</p> <p style="text-align: right;">2021.00.00.(요일).00시 기준</p> <p>○ (지표환자) 나이, 성별, 직업, 증상발생일 - 역학적 위험요인 : 유행지역 방문력,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 CT값: E gene , RdRP gene , N gene</p> <p>○ (집단발생 인지경위)</p> <p>○ (시설현황) - 기관명(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시설현황 / 업무형태 : - 직원현황(구성):</p> <p>○ (환자발생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219 758 925 933"> <thead> <tr> <th rowspan="2">시도</th> <th colspan="2">계</th> <th colspan="7">진단일</th> </tr> <tr> <th>(명)</th> <th>(%)</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환자 구성 : 직원 0, 방문자 0, 가족 및 지인 0명</p> <p>○ (검사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219 1029 925 1149">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검사대상</th> <th colspan="3">추가전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양성</th> <th>음성</th> <th>진행중</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가족 및 지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추정감염경로) - 근원환자 정보 포함</p>	시도	계		진단일							(명)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구분	검사대상	추가전파			비고	양성	음성	진행중	계						직업						가족 및 지인						<p>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참고)</p> <p>집단사례조사서 (월일-시·도-시·군·구-사례명)</p> <p style="text-align: right;">2021.00.00.(요일).00시 기준</p> <p>○ (지표환자) 나이, 성별, 직업, 증상발생일 - 역학적 위험요인 : 유행지역 방문력,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 CT값: E gene , RdRP gene , N gene</p> <p>○ (집단발생 인지경위)</p> <p>○ (시설현황) - 기관명(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시설현황 / 업무형태 : - 직원현황(구성):</p> <p>○ (환자발생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969 758 1675 933"> <thead> <tr> <th rowspan="2">시도</th> <th colspan="2">계</th> <th colspan="7">진단일</th> </tr> <tr> <th>(명)</th> <th>(%)</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h>00.00</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환자 구성 : 직원 0, 방문자 0, 가족 및 지인 0명</p> <p>○ (검사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969 1029 1675 1149">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검사대상</th> <th colspan="3">추가전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양성</th> <th>음성</th> <th>진행중</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가족 및 지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추정감염경로) - 근원환자 정보 포함</p>	시도	계		진단일							(명)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구분	검사대상	추가전파			비고	양성	음성	진행중	계						직업						가족 및 지인						<p>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지자체 역량 가능한 범위에서 접촉자 관리 및 집단사례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p>
시도	계		진단일																																																																																																																																																																												
	(명)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구분	검사대상	추가전파			비고																																																																																																																																																																										
		양성	음성	진행중																																																																																																																																																																											
계																																																																																																																																																																															
직업																																																																																																																																																																															
가족 및 지인																																																																																																																																																																															
시도	계		진단일																																																																																																																																																																												
	(명)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구분	검사대상	추가전파			비고																																																																																																																																																																										
		양성	음성	진행중																																																																																																																																																																											
계																																																																																																																																																																															
직업																																																																																																																																																																															
가족 및 지인																																																																																																																																																																															
73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격리해제 기준 삭제
85	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삭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해제 기준 삭제
부록			
95	법조항 제41조, 제43조	법조항 제41조, 제43조 삭제	격리치료, 통지 근거 조항이므로 삭제
98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고시 개정에 따라 강제처분 조항 삭제
101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3 격리참여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부록 3 격리참여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p> <p>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되어 격리에 참여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격리참여자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담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확진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div>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103	부록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도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 4 삭제	격리 권고 전환																																																																																																																																									
104	부록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부록 5 삭제	위기단계하향에 따른 삭제																																																																																																																																									
112	부록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수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상황, 행위</th> <th colspan="5">개인보호구*</th> </tr> <tr> <th colspan="2">호흡기 보호</th> <th colspan="2">전신 보호</th> <th>눈 보호</th> </tr> <tr> <th>수술용 마스크</th> <th>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th> <th>전동식 호흡기 보호구</th> <th>일회용 장갑</th> <th>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th> <th>고글 (또는 안면보호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선별진료소</td> <td>선별진료소 접수, 안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선별진료소 진료, 간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이송</td> <td>이송(구급차, 운전자)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확진/의심 환자 이송(경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의심환자 등송 보호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진료</td> <td>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에어러를 생성 처치³⁾</td> <td></td> <td>● (선택 사용 가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호흡기 검체 채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검체 관리</td> <td>검체 취급(살형살, 검사실 등)³⁾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검체 이송(따슨없이 포장된 검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장례</td> <td>시신 접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신백 이송, 관 운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청소·소독</td> <td>청소·소독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폐기물</td> <td>의료폐기물 포장, 취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의료폐기물 운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p> <p>- 일회용 기운, 고글(안면보호구)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 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한다.</p> <p>(출처)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core-practices/index.html</p> <p>*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러를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p>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¹⁾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경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의심환자 등송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²⁾		●		●	●	●	에어러를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살형살, 검사실 등) ³⁾⁴⁾		●		●	●	●	검체 이송(따슨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소독 ⁵⁾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격리 권고 전환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¹⁾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경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의심환자 등송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²⁾		●		●	●	●																																																																																																																																					
	에어러를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살형살, 검사실 등) ³⁾⁴⁾		●		●	●	●																																																																																																																																					
	검체 이송(따슨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소독 ⁵⁾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정보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24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삭제)	-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기관 요건 변경(23.3.1.)에 따른 검사가능기관 목록 삭제(중앙방역대책본부-2490, 23.2.13.)																
138	부록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발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록 1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발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참조</div> <div style="margin-top: 5px;">㉠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div> <div style="margin-top: 5px;">㉡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div>	참조 지침 현행화																
146~14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록 18. 감염경로 분류 기준 및 집단사례 등록관리 방안</div> (이하 생략)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록 18. 감염경로 분류 기준 및 집단사례 등록관리 방안 <삭제></div>	감염경로 분류 기준 및 집단사례 등록관리 방안 삭제																
156	○ (관리) 「중수본 병상배정·재원관리팀」... * → 병상배정·재원관리팀(보건...) 및.... ○ (퇴실 명령 및 행정조치) ① (병상배정·재원관리팀) ... - ... - ... 중수본 병상배정·재원관리팀...으로... ②-2. (중수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재원기간</td> <td>1~5일</td> <td>6~10일</td> <td>11~20일</td> </tr> <tr> <td>손실보상 삭감</td> <td>7배 → 1배</td> <td>5배 → 1배</td> <td>3배 → 1배</td> </tr> </table>	재원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7배 → 1배	5배 → 1배	3배 → 1배	○ (관리)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 → 환자병상관리팀(보건...) 및.... ○ (퇴실 명령 및 행정조치) ① (환자병상관리팀) ... - ... - ...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으로... ②-2. (중수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재원기간</td> <td>1~5일</td> <td>6~10일</td> <td>11~20일</td> </tr> <tr> <td>손실보상 삭감</td> <td>5배 → 1배</td> <td>4배 → 1배</td> <td>3배 → 1배</td> </tr> </table>	재원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5배 → 1배	4배 → 1배	3배 → 1배	- 중수본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가 병상배정재원관리팀에서 환자병상관리팀으로 이관(23. 3. 1.)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23. 3. 1.)
재원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7배 → 1배	5배 → 1배	3배 → 1배																
재원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5배 → 1배	4배 → 1배	3배 → 1배																
104	부록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삭제																	
16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록 3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록 3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div>	○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치료비 지침 참조 필요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Ⅶ. 환경관리(소독·환기) →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참고</p> <p>(이하 생략)</p> <p>○ (접촉자 조사) -----</p> <p>(이하 생략)</p> <p>-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p> <p>▶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정보 필요시 확인 : 동선은 환자 면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 DUR[㉡], 카드사용내역[㉢], (전자)출입명부[KI-Pass][㉣], 간편전화체크인[㉤], 수기명부[㉥]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름</p> <p>① GPS 조화는 시군구, 시도에서 경찰관서등에 요청 가능(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p> <p>② DUR과 카드사용내역 조화는 시도 방역관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p> <p>③ (전자)출입명부[KI-Pass] 조화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요청</p> <p>④ 간편전화체크인 조화는 해당 시설관리자 또는 해당업체 서버 접속 또는 해당업체 보안매일을 통한 정보요청</p> <p>⑤ 수기명부는 해당시설 방문을 통해 정보수집</p> <p>▶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안심번호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p> <p>▶ (전자)출입명부 활용한 접촉자 추적관리 절차 - 시설물 방문자 정보요청→시설물 방문자 정보 통신사업자(SKT, KT, LGU) 능동감시 시스템(다중이용시설 방문)에 등록→접촉자 관할 시·도에 검사 및</p> <p>▶ 필요서류 : 정보요청 공문, 공문작성자 신분증</p>	<p>▶ “Ⅶ. 환경관리(소독·환기) →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 -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참고 - 「슬기로운 환기수칙-공기청정기편」 참고</p> <p> 참고자료 [부록 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p> <p>(이하 생략)</p> <p>○ (접촉자 조사) -----</p> <p>(이하 생략)</p> <p>-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p> <p>▶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정보 필요시 확인 : 동선은 환자 면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 DUR[㉡], 카드사용내역[㉢], (전자)출입명부[KI-Pass][㉣], 간편전화체크인[㉤], 수기명부[㉥]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름</p> <p>① GPS 조화는 시군구, 시도에서 경찰관서등에 요청 가능(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p> <p>② DUR과 카드사용내역 조화는 시도 방역관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p> <p>③ (전자)출입명부[KI-Pass] 조화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요청</p> <p>④ 간편전화체크인 조화는 해당 시설관리자 또는 해당업체 서버 접속 또는 해당업체 보안매일을 통한 정보요청</p> <p>⑤ 수기명부는 해당시설 방문을 통해 정보수집</p> <p>▶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안심번호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p> <p>▶ (전자)출입명부 활용한 접촉자 추적관리 절차 - 시설물 방문자 정보요청→시설물 방문자 정보 통신사업자(SKT, KT, LGU) 능동감시 시스템(다중이용시설 방문)에 등록→접촉자 관할 시·도에 검사 및</p> <p>▶ 필요서류 : 정보요청 공문, 공문작성자 신분증</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 범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정보*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범위)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보 - (시점)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코로나19 대응 지침 7-4판('20.4.3)부터 증상발생 '1일 전 → 2일 전'으로 변경 적용 - (장소) 시·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 포함)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추가) 동선 공개시 해당 시설 소독이 완료되었다면 전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항을 해당 기관에 공지 <p>다. 조치사항</p> <p>1)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p> <p style="margin-left: 20px;">○ -----</p> <p>▶ (위험도 평가) ----- : -----</p> <p>▶ (접촉자 평가) -----</p> <p>▶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p> <p>▶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p> <p>(이하 생략)</p> <p>(이하 생략)</p> <p>4) 시설 내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가) 적용 상황</p> <p style="margin-left: 20px;">○ -----</p>	<p>▶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 범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정보*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범위)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보 - (시점)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코로나19 대응 지침 7-4판('20.4.3)부터 증상발생 '1일 전 → 2일 전'으로 변경 적용 - (장소) 시·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 포함)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추가) 동선 공개시 해당 시설 소독이 완료되었다면 전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항을 해당 기관에 공지 <p>다. 조치사항</p> <p>1)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p> <p style="margin-left: 20px;">○ -----</p> <p>▶ (위험도 평가) ----- : -----</p> <p>▶ (접촉자 평가) -----</p> <p>▶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p> <p>▶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p> <p>(이하 생략)</p> <p>(이하 생략)</p> <p>4) 시설 내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가) 적용 상황</p> <p style="margin-left: 20px;">○ -----</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	-----------	-------------	------

▶ **집단시설 노출위험평가 및 관리계획 업무절차 참고 사항(예시)**
 * 지자체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계별 주요내용	현황정보 및 방식	예상 기간	비고
1. 1차 노출위험평가	5가지 항목 바탕 '상', '중', '하'로 구분 ① 노출시기, ② 노출장소, ③ 노출형태, ④ 노출규모, ⑤ 노출자 특성	당일	합동 회의 참석기관
2. 관리방식 결정	① 시설 : 출입동제, 폐쇄 범위 및 기간 ② 노출자 - 검사 : 전수, 추적, 격리예제 - 증상감시 : 수동(=보건교육) - 격리 : 자가, 시설(1인, 동일집단격리=코호트) ③ 지원계획 : 보건인력, 의료시설, 이송 ④ 전체 정보관리 및 관련 지자체 공유 방안 ⑤ 언론 공개 범위, 시기, 방식		
3. 관리상황 모니터링	① 검사, 이송 등 진행사항 ② 추가환자 발생 상황	1일 이상	
4. 노출위험 재평가	① 관리시기, 장소, 대상 변경 논의 후 확정		
5. 유행증간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7일 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작성주체 결정
6. 유행종결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14일 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14일 이내	작성주체 결정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상황별 추가 조치사항(요약)**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시도 방역관의 상황평가 후 판단

상황	시설·환경 관리	접촉자 관리	인력 관리
병원	- 병동(병원) 일시 폐쇄 고려 - 환경조사(검사) - 소독 및 재개장	- 입원환자 1인 1실, 또는 동일집단 격리 - 의료진 자가격리	- 대체근무 - 인력 편성
집단 시설	- 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 환경조사(검사) - 소독 및 재개장	- 중증 환자는 병원이송 - 접촉자는 1인1실 격리 원칙 ※ 병원 이송이나 1인1실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퇴원 후 자가격리 또는 동일집단 격리	- 대체근무 - 인력 편성
광범위 노출	- 시설별 노출 평가 - 통제 및 소독	- 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부처 협력 체계 마련(경찰, 소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지침」** 참조

☞ **참고자료** [부록 7]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방법
 나)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이하 생략)

▶ **집단시설 노출위험평가 및 관리계획 업무절차 참고 사항(예시)**
 * 지자체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계별 주요내용	현황정보 및 방식	예상 기간	비고
1. 1차 노출위험평가	5가지 항목 바탕 '상', '중', '하'로 구분 ① 노출시기, ② 노출장소, ③ 노출형태, ④ 노출규모, ⑤ 노출자 특성	당일	합동 회의 참석기관
2. 관리방식 결정	① 시설 : 출입동제, 폐쇄 범위 및 기간 ② 노출자 - 검사 : 전수, 추적, 격리예제 - 증상감시 : 수동(=보건교육) - 격리권고 : 자가, 시설(1인, 동일집단격리=코호트) ③ 지원계획 : 보건인력, 의료시설, 이송 ④ 전체 정보관리 및 관련 지자체 공유 방안 ⑤ 언론 공개 범위, 시기, 방식		
3. 관리상황 모니터링	① 검사, 이송 등 진행사항 ② 추가환자 발생 상황	1일 이상	
4. 노출위험 재평가	① 관리시기, 장소, 대상 변경 논의 후 확정		
5. 유행증간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7일 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작성주체 결정
6. 유행종결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14일 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14일 이내	작성주체 결정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상황별 추가 조치사항(요약)**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시도 방역관의 상황평가 후 판단

상황	시설·환경 관리	접촉자 관리	인력 관리
병원	- 병동(병원) 일시 폐쇄 고려 - 환경조사(검사) - 소독 및 재개장	- 입원환자 1인 1실, 또는 동일집단 격리 권고 - 의료진 자가격리 권고	- 대체근무 - 인력 편성
집단 시설	- 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 환경조사(검사) - 소독 및 재개장	- 중증 환자는 병원이송 - 접촉자는 1인1실 격리권고 원칙 ※ 병원 이송이나 1인1실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퇴원 후 자가격리 또는 동일집단 격리권고	- 대체근무 - 인력 편성
광범위 노출	- 시설별 노출 평가 - 통제 및 소독	- 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부처 협력 체계 마련(경찰, 소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지침」** 참조

☞ **참고자료** [부록 7]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방법
 나)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이하 생략)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다) 집단시설 폐쇄 결정 (이하 생략)</p> <p>라) 집단시설 내 확진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관리 전문가와 함께 관리계획 수립」 ○ 환자는 공동 생활관과 분리된(독립된) 생활관(구역)으로 이동하여 1인 1실 또는 동일집단 격리」</p> <p>마) 집단시설 내 접촉자 관리」 ○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 1인 1실 원칙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동일집단격리 등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 적용」 ○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등 여부 모니터링(2회/일)」</p> <p>바) 집단시설 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중인 환자(동반 보호자 등 포함)를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을 적용」 ○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차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격리해제」</p> <p>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이하 생략)</p> <p>5. 역학조사 정보관리」 (이하 생략)</p>	<p>다) 집단시설 폐쇄 결정 (이하 생략)</p> <p>라) 집단시설 내 확진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관리 전문가와 함께 관리계획 수립」 ○ 환자는 공동 생활관과 분리된(독립된) 생활관(구역)으로 이동하여 1인 1실 또는 동일집단 격리 권고」</p> <p>마) 집단시설 내 접촉자 관리」 ○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권고,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권고」 ○ 1인 1실 원칙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동일집단격리 권고 등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 적용」 ○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등 여부 모니터링(2회/일)」</p> <p>바) 집단시설 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중인 환자(동반 보호자 등 포함)를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을 적용」 ○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차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24:00) 격리해제」</p> <p>(삭제) (이하 생략)</p> <p>(삭제) (이하 생략)</p>	
202	부록 3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삭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해제 기준 삭제
203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 (진단총괄팀) 입국후 3일차 검사 권고 중단에 따른 '해외입국자' 삭제, 밀접 접촉자 관리 방안 변경에 따른 증빙 자료 현행화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28 226 544 271">우선순위 검사 대상</th> <th data-bbox="544 226 911 271">증빙자료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data-bbox="228 284 911 311">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r> <tr> <td data-bbox="228 323 544 351">- 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d data-bbox="544 323 911 35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28 363 911 391">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 </tr> <tr> <td data-bbox="228 403 544 446">-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 <td data-bbox="544 403 911 446">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28 459 911 486">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 </tr> <tr> <td data-bbox="228 499 544 542">-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 <td data-bbox="544 499 911 542">확진자로부터 전달받은 확진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td> </tr> <tr> <td data-bbox="228 555 544 630">-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td> <td data-bbox="544 555 911 630">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td> </tr> <tr> <td data-bbox="228 643 544 686">-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정기항공 입국인**에 한함 (항공권, 입국인, B1, 2, C1, C1-4, H1, H2, H3, H4)</td> <td data-bbox="544 643 911 686">입국심사확인승(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입출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28 699 911 726">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 </tr> <tr> <td data-bbox="228 738 544 766">-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td> <td data-bbox="544 738 911 766">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td> </tr> <tr> <td data-bbox="228 778 544 805">- 입영, 징집</td> <td data-bbox="544 778 911 805">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td> </tr> <tr> <td data-bbox="228 818 544 861">-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td> <td data-bbox="544 818 911 861">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출생, 서류, 문자 등</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28 874 911 901">신속형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 </tr> <tr> <td data-bbox="228 914 544 957">- 신속형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td> <td data-bbox="544 914 911 957">의사의 소견서(신속형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td> </tr> </tbody> </table> <p data-bbox="228 970 911 1013">* 유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정기비지 : A1~3, D1~10, E1~10, F1~4, H1, H1-2, G-1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초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p>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전달받은 확진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정기항공 입국인**에 한함 (항공권, 입국인, B1, 2, C1, C1-4, H1, H2, H3, H4)	입국심사확인승(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입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징집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출생, 서류, 문자 등	신속형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형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형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78 226 1294 271">우선순위 검사 대상</th> <th data-bbox="1294 226 1662 271">증빙자료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data-bbox="978 284 1662 311">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r> <tr> <td data-bbox="978 323 1294 351">- 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d data-bbox="1294 323 1662 35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 </tr> <tr> <td colspan="2" data-bbox="978 363 1662 391">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 </tr> <tr> <td data-bbox="978 403 1294 446">-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 <td data-bbox="1294 403 1662 446">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 </tr> <tr> <td colspan="2" data-bbox="978 459 1662 486">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 </tr> <tr> <td data-bbox="978 499 1294 542">-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 <td data-bbox="1294 499 1662 542">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td> </tr> <tr> <td data-bbox="978 555 1294 630">-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td> <td data-bbox="1294 555 1662 630">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공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td> </tr> <tr> <td data-bbox="978 643 1294 686">-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정기항공 입국인**에 한함 (항공권, 입국인, B1, 2, C1, C1-4, H1, H2, H3, H4)</td> <td data-bbox="1294 643 1662 686">입국심사확인승(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입출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 </tr> <tr> <td colspan="2" data-bbox="978 699 1662 726">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 </tr> <tr> <td data-bbox="978 738 1294 766">-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td> <td data-bbox="1294 738 1662 766">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td> </tr> <tr> <td data-bbox="978 778 1294 805">- 입영, 징집</td> <td data-bbox="1294 778 1662 805">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td> </tr> <tr> <td data-bbox="978 818 1294 861">-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td> <td data-bbox="1294 818 1662 861">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td> </tr> <tr> <td colspan="2" data-bbox="978 874 1662 901">신속형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 </tr> <tr> <td data-bbox="978 914 1294 957">- 신속형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td> <td data-bbox="1294 914 1662 957">의사의 소견서(신속형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td> </tr> </tbody> </table> <p data-bbox="978 970 1662 1013">* 유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정기비지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초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p>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공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정기항공 입국인**에 한함 (항공권, 입국인, B1, 2, C1, C1-4, H1, H2, H3, H4)	입국심사확인승(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입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징집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형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형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형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전달받은 확진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정기항공 입국인**에 한함 (항공권, 입국인, B1, 2, C1, C1-4, H1, H2, H3, H4)	입국심사확인승(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입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징집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출생, 서류, 문자 등																																																														
신속형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형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형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공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정기항공 입국인**에 한함 (항공권, 입국인, B1, 2, C1, C1-4, H1, H2, H3, H4)	입국심사확인승(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입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징집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형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형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형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216-223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이하 생략) ~~~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삭제>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별도 매뉴얼 참고 삭제																																																												
224-226	부록 40 (붙임1). 재조합변이, BA 2.12.1 조사·대응 사례 (이하 생략) ~~~	부록 40 (붙임1). 재조합변이, BA 2.12.1 조사·대응 사례 <삭제>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별도 매뉴얼 참고 삭제																																																												
227	부록 41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일시외출 안내문	부록41 삭제	격리 권고 전환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문고 답하기(Q&A)			
237	<p>Q11. ~~~~</p> <p>○ 공휴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신 후,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Q11.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div> <p>○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p> <p>○ 만약 PCR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와 함께 PCR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공휴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신 후,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p>
238	<p>Q14.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 단기체류 외국인은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의 '해외입국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p>○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해외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무료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코로나19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하셔야 합니다.</p>	<p>Q14. -----, ----- -----?</p> <p>○ '23년 6월부터 해외입국자 3일차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 (삭제)</p>	<p>- 입국후 3일차 검사 권고 중단에 따른 '해외입국자' 삭제</p>
239	<p>Q20.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할 수 있나요?</p> <p>○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검사를 보조하거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p>	<p>(삭제)</p>	<p>- 선별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자가검사 미시행 및 자가검사제품 사용 일반화 상황 반영</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Q21. 집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 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으신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 를 권고드립니다. ○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하시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p>Q21. -----? -----,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고(검사비 무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삭제) 	<p>- (진단총괄팀) 방역 정책 개편에 따른 현행화</p>
241	<p>Q4.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p>Q4.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삭제 ○ 삭제 ▶ 삭제 	<p>○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변경</p>
243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5. 접촉자 및 확진환자</p> <p>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p> <p>○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를 조사합니다.</p> <p>▶ 감염취약시설 3종</p> <p>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p> <p>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p> <p>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p> <p>▶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p> <p>-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p> <p>-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p> <p>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p> <p>○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실시합니다.</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합니다.</p>	<p>5. 접촉자 및 확진환자</p> <p>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p> <p>○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를 조사합니다.</p> <p>▶ 감염취약시설 3종</p> <p>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p> <p>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p> <p>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p> <p>▶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p> <p>-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p> <p>-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p> <p>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p> <p>○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실시합니다.</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합니다.</p>	<p>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접촉자 관리 방안 삭제</p>
244	<p>6. 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p> <p>추가</p> <p>추가</p> <p>추가</p>	<p>삭제 및 추가</p> <p>6. 격리 권고에 따른 자가격리(확진환자)</p> <p>Q2.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 시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p> <p>○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및 환경소독을 철저히 하고 공용공간에 함께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p> <p>Q3.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p> <p>○ 자율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p>○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p> <p>*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p>	<p>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p> <p>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전환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으로 수정 및 추가</p>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data-bbox="965 228 1671 268">Q1.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 시 지켜야할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965 292 1671 347">○ 확진자는 격리 권고 기간동안 자율격리 시에 다른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li data-bbox="965 355 1671 411">○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특히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li data-bbox="965 419 1671 475">○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li data-bbox="965 483 1671 539">○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며, 문고리나 전등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li data-bbox="965 547 1671 603">○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li data-bbox="965 611 1671 667">○ 또한,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주세요. <li data-bbox="965 675 1671 730">○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p data-bbox="965 850 1671 890">Q4.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965 914 1671 970">○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격리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에 동의하시어 격리 시행 중인 분이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및 장례 등 허용된 외출 범위 이외의 사유로 외출 시에는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 data-bbox="965 1026 1671 1066">Q5.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965 1090 1671 1114">○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의무 격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p data-bbox="965 1137 1671 1177">Q6. 확진 후 증상 악화 등으로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965 1201 1671 1257">○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쪽	현행(13-2판)	13-3판 개정(안)	개정사유
		<p>Q7. 수술을 위한 입원 중에 확진되었는데, 격리를 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이 변하지 않았고,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과 전파위험력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히 면적이 저하된 환자나 고령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p>Q8.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전파의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초 검체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따라서,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증,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서도 20일을 초과한 입원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55	11.코로나19와 동물	삭제	
256	<p>12. 재검출 사례</p> <p>Q5. 첫 확진 후 45-89일 사이 재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p> <p>○ 이러한 경우 별도의 관리조치는 필요 없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재검출 사례조사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p>	12. 재검출 사례 (삭제)	재검출 사례조사 중단에 따른 삭제